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신설 2021. 6. 10.>

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

[ ] 신규신청
[ ] 연장신청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
신청인	업체(기관)명		대표자 성명	
	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		업종형태: 제조자 [ ] 수입자 [ ] 판매자 [ ]	
	주소			
	실무책임자	성명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
제조자	업체명		대표자 성명	
	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			
	주소			
	실무책임자	성명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
신청제품 (필요 시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.)	검증 분야		제품명칭	
	용도		검증 신청제품 처리 방법	반환 [ ] 폐기 [ ]
	기본 모델명		파생 모델명	
	검증 신청제품 제출	시험평가 신청 제품 1식 [ ]		
	접근성 기능 설명			
	1.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			
	해당 제품 기능			
	2.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			
	해당 제품 기능			
	3.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			
	해당 제품 기능			
	4.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			
	해당 제품 기능			
	5.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			
	해당 제품 기능			
	6.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			
	해당 제품 기능			
	7.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			
	해당 제품 기능			
	8.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			
	해당 제품 기능			
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(또는 대리인) (전화번호: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제품설명서, 2. 사용자 취급설명서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증 수행	→	검증서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	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